

-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능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-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기념비와 애함비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서 정한 공원점용허가 대상이 아님으로 사용료 및 면제조항 삭제

3. 주요골자

- 기념비와 애함비에 대한 점사용료 감면 조항을 삭제

4. 검토의견

- 기념비는 도시공원법제2조 및 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 의한 공원이설
로써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고 동법 제4조 공원조성계획의 의한 설치
및 관리를 하므로,
- 애함비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 규정에서 정한 공원점용
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기념비와 애함비는 사용료 및 점용료의 부과관련
규정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됨.